

2016년도 시행 제5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상 법	응시번호		성 명	

〈제 1 문〉

가구의 제작 및 판매업을 하는 甲회사는 2015. 8.경 乙회사의 丙회사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2016. 2.경 甲회사는 가구수리업을 하는 丁회사에 흡수합병되었고, 합병 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런데 甲회사는 흡수합병계약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발행주식총수의 4%를 보유하고 있는 A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기회를 갖지 못하였던 A는 2016. 3.경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B에게 매도하였다.

이후 丁회사는 가구 판매부분 및 이와 관련된 채무를 분리하여 승계하는 단순분할신설회사 戊를 설립하면서 분할회사 丁의 연대책임을 배제하였다. 이때 분할 전 丁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면서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최고를 하였지만 丙회사에 최고하지 않았다. 한편 丙회사는 丁회사의 분할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丁회사의 분할계획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분할 이후 丁회사의 대표이사 C는 이사회를 열어 이사 선임결의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에게 동남아 여행권 등을 제공하기로 결의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측근인 D를 이사로 선임하였다. 丁회사 발행주식총수의 5%를 보유하고 있는 E는 위 이사선임 절차에 불만을 갖고 대표이사 C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기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자 E는 C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면서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C의 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면서 F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였다.

※ 위의 각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비상장 주식회사임

1. 2016. 6.경 B가 A에 대한 소집통지 흡결로 인한 주주총회결의 하자 및 A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회의 상실을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한 경우, 각 주장에 대한 당부는? (15점)
2. 분할 이후 乙회사가 丙회사에게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丙회사는 누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15점)
3. E는 대표이사 C의 동남아 여행권 등을 제공행위 및 이사 D의 선임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다퉄 수 있는가? (15점)
4. F는 이사의 정원을 늘리는 정관변경 및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가? (5점)

제 2 문

〈제2문의 1〉

甲은 2010. 1.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오후의 산책’이라는 상호로 커피·차·제과·빵을 제조·판매하여 왔다. 甲이 판매하는 것들은 자신이 특별히 개발한 제조법에 따른 것이다. 甲은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되어 2016. 3. 2. 乙에게 매장 내 있던 테이블 및 의자 10세트와 조명은 제외하고 자신의 설비 및 점포 일체, 그 제조법은 물론 원자재 공급 업체와의 거래 내역까지 인계하여 그 대금 및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후로 乙은 그 점포에서 현재까지 ‘휴식의 시간’이라는 상호로 커피·차·제과·빵을 제조·판매해 오고 있다. 한편, 甲은 계획했던 프랑스 유학이 좌절되자, 2016. 5. 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커피와 제과를 파는 ‘뽀띠 프랑스’라는 디저트 카페를 열어 영업을 하고 있다. (각 문항은 독립된 것임)

1. 甲과 乙 사이에 상법상 영업양도계약의 성립 여부를 논하시오. (5점)
2. 甲과 乙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가정할 때,
 - (1) 乙에 대한 甲의 상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논하시오. (10점)
 - (2) 丙이 2015. 2.경 甲에 대하여 甲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乙은 현재 丙에게 변제 책임이 있는가? 만일 2015. 12.경 甲이 丁에게 자신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을 취득하였고, 乙이 ‘오후의 산책’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중에 2016. 4. 2. 丁이 乙에게 변제를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 (10점)

〈제2문의 2〉

甲은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였고, 乙은 임차한 건물에서 섬유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乙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A보험회사에 청약하고 동시에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청약일로부터 2주가 지나도록 A보험회사가 승낙을 하지 않고 있던 중 乙의 경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다.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乙은 이러한 사정을 A보험회사에 알렸다.

1. 甲은 A보험회사에 손해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가? (7점)
2. 甲이 A보험회사에 손해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권리와 甲이 乙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10점)
3. 甲이 A보험회사에 손해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그 권리와 乙의 A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8점)

확인 : 법무부 법조인력과장

